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민간위탁의 개념에 최초 위탁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재위탁’의 개념을 법령상 용어에 따라 명확히 정립하고, 위탁금액에 상관 없이 원칙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정의에 최초 위탁 및 공개모집 등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 ·

위탁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도록 명문화함(안 제2조제1호)

나. ‘재위탁’을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

에게 다시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재정의함(안 제2조제4호)

다. 현행 제5조(의회 동의 등)제1항제3호를 삭제하여, 위탁금액에 상관 없이 원칙적

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에서 혼용되던 용어를 정비하여 재위탁에

대한 동의 규정을 조문 성격에 맞게 조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의회사무과

- 전화 : 02)3396-8157 팩스 : 02)3396-9055

- E-mail : ycr7607@junggu.seoul.kr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6. 8. 20.

발 의 자 : 문 영 희 의원 외 3명

(강운희 의원, 김득천 의원, 강현미 의원)

1. 제안이유

민간위탁의 개념에 최초 위탁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재위탁’의 개념을 법령상 용어에 따라 명확히 정립하고, 위탁금액에 상관 없이 원칙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정의에 최초 위탁 및 공개모집 등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위탁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도록 명문화함(안 제2조 제1호)

나. ‘재위탁’을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른 법인·단체 또

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재정의함(안 제2조제4호)

다. 현행 제5조(의회 동의 등)제1항제3호를 삭제하여, 위탁금액에 상관 없이 원칙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에서 혼용되던 용어를 정비하여 재위탁에 대한 동의 규정을 조문 성격에 맞게 조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재위탁)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최초 위탁과 기존 민간수탁기관과의 계약 종료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위탁사무의 일부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재위탁 및 재계약”을 “재계약”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회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의 삭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하거나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사무, 또는 재계약하는 사무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회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마치고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한다)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신설>	1. ----- ----- ----- ----- ----- ----- ----- ----- ----- ----- ----- ----- ----- ----- ----- ----- <u>이 경우 최초 위탁과 기존 민간수탁기관과의 계약 종료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u>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4. “재위탁”이란 <u>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u>	4. “재위탁”이란 <u>민간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위탁사무의 일부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u>

는 것을 말한다.

5. (생 략)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2. (생 략)

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②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재계약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